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
----------	----

제출년월일 : 2000. 12. 12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물품의 사용, 처분 등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아니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 개선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물품의 노후, 내구연수의 경과 등으로 불용처분을 할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하는 물품가격기준을 조정함
(안 제16조 제3항)

- 취득가격이 1천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한 불용처분시 타시도에 소요조회를 하던 것을 2천만원이상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타시도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함
- 취득가격이 1천만원미만 물품에 대하여 동일 시도에 소요조회 하던 것을 폐지함

나. 불용품의 매각가격 결정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물품의 가격기준을 취득가격 1천만원이상의 물품에서 2천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7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제정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123조 내지 124조

나. 기 타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개선지침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으로서 재환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 본문중 “단가 1천만원이상”을 “단가 2천만원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동일광역시(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p> <p>2. 동일광역시(자치구 포함)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 가격 기준)이 10백만원미만인 경우</p>	<p>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p>
<p>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③ (생략)</p> <p>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단 가 2천만원이상 ----- ----- ----- -----</p>